

하도급거래 준수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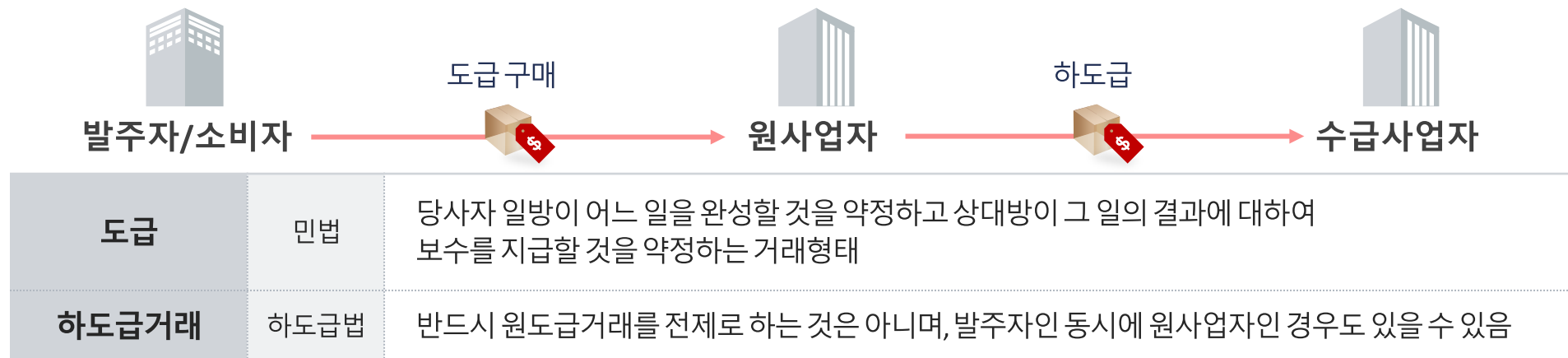
2025. 10.

목 차

- I. 하도급거래의 개념
- II. 하도급법 주요의무
- III. 상생협력방안 신청안내
- IV. 분쟁발생시 신고채널

I. 하도급거래의 개념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

(예: 건설공사에서 자체공사, 제조업자의 제조위탁 등)

적용 대상 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 3항)

원사업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단,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수탁기업보다 많은 중소기업 적용)
------	---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름

적용대상 거래: 제조위탁 및 용역위탁

01 제조위탁의 정의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수리·판매·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규격, 사양, 납기지정)

- **대상:** 사양을 지정·주문한 완제품, 부품, 금형, 포장용기·라벨, 임가공 등
- **제외:** 자가소비용 단순 물품구매(업과 관련 없는 위탁), 기성제품구매, 물품 생산 위한 생산설비·장비 등 (구매에 해당)

02 용역위탁의 정의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대상:** 정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영화, 방송프로그램, 문자, 도형 성과물, 엔지니어링, 화물운송, 경비, 설계용역 등
- **제외:** 제조/판매업자가 방송광고물의 제작을 광고업체에 위탁하거나, 공장 설계도면 작성 등을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 예시 (엔터사의 경우)

대분류	중분류	하도급법 적용 여부 (용역위탁 여부)
영상물 제작	영상물의 기획·편성·제작	O
	영상물의 제작을 위한 서비스업 (촬영, 녹음, 조명, 무대장치 등)	O
	영상물의 제작을 위한 용역업 (보조출연, 메이크업 등)	X
	영상물의 제작을 위한 시설·소품 대여업	X
음원 제작	음원의 제작	X
음반 제작	유형의 저장매체에 음원 저장(레코딩)	O
	음반 부속품(포토카드, 표지) 제작	O
	음반 부속품 디자인	X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 예시 (엔터사의 경우)

대분류	중분류	하도급법 적용 여부 (용역위탁 여부)
판매용 상품 제작	판매용 상품 제작	O
	판매용 상품 디자인	X
공연	공연 진행 대행 (장소섭외, 진행 등)	X
	공연용 무대미술 등 제작	O
	공연을 위한 서비스업 (촬영, 조명, 음향 등)	O
사진촬영	포스터·앨범 등 사진촬영	X
안무제작	안무 제작위탁	X
공연 무대 설치	공연 무대 설치	X

II. 하도급법 주요 의무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내용 요약

원사업자		발주자	수급사업자
의무 (9개)	금지 (13개)	의무	의무·준수사항
-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3년) [§3] - 선급금 지급 [§6] - 내국신용장 개설 [§7]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9] 하도급대금 지급 [§1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3-2] - 관세 등 환급금 지급 [§15]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16]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16-2]	부당특약 [§3-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 - 물품 등의 구매강제 [§5]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 [§8] 부당반품 [§10] 부당감액 [§11]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1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12-2]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12-3] - 부당한 대물변제 [§17] - 부당한 경영간섭 [§18] - 보복조치 [§19] - 탈법행위 [§20]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14]	- 서류보존의무 [§3] - 계약이행보증(건설) [§13-2] -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21]

1.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3)

서면 교부

법정사항 기재
(배포 예정인 표준계약서 이용)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

사전에(작업 착수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법정기재사항

- ① 목적물
- ②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 ⑦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2. 부당특약 금지 (§3-4)

부당특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것

심사대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약정한 모든 계약조건 (하도급거래임을 전제)

위법성 판단기준

다음 6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계약조건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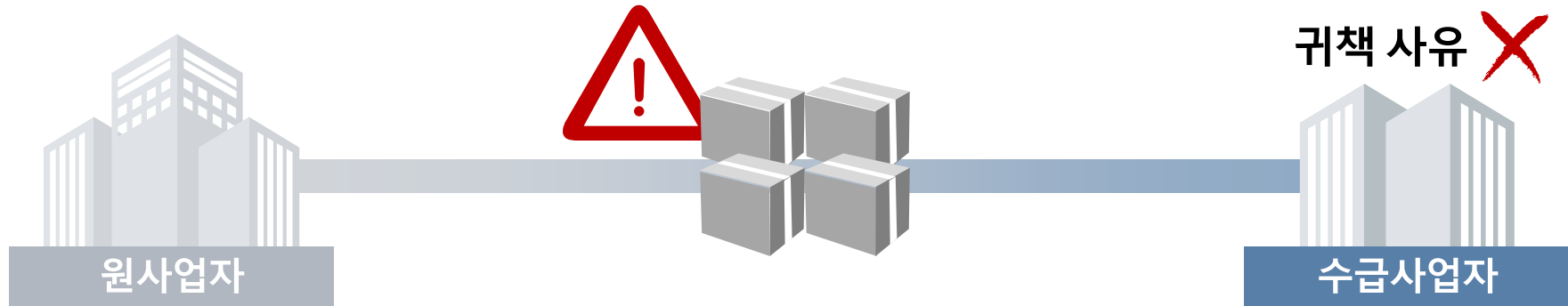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 금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 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
7.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8)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or 목적물 수령·인수의 거부 또는 지연 금지**
(단, 역무공급거래는 수령거부금지 규정 적용 제외)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9)

검사기준·방법

- 쌍방 협의로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

검사결과 통지

-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통지. 단,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 합격으로 간주

통지의무의 예외

통상적인 사유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불가피한
장기간 검사**



거대한 건설공사(댐, 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6. 반품 금지(§10)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거나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부당반품 예시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7. 감액 금지(§11)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위반시 감액분에 대하여 연 15.5% 지연이자지급의무
-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가능 → 이때,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사유 및 기준을 사전 서면 통지**하여야 함

부당감액 예시

- 위탁할 때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행위
- 현금지급이나 지급기일 전의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장비를 자기로부터 구입·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지급 시점의 자재가격 등이 납품 시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12-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례 예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9. 기술자료 제공강요 및 유용 금지 (§12-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는 가능)

- 수급자 기술자료 제공강요 및 타 업체 제공행위
- 제안서상 기술자료, 광고전략, 아이디어 무단사용행위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는 가능
- 기술자료 요구시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 교부** 의무
- 기술자료 제공받는 시점까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술자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상 정보 및 자료

9. 기술자료 제공강요 및 유용 금지 (§12-3)

01

기술자료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02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

기술자료 요구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기재
비밀유지계약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기재

03

정당하게 취득한 기술자료라도, 이를 유용하는 것은 위법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 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10.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 제13조)

법정지급기일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대금 받은 날로부터 15일

지연이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어음할인료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7.5%의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지급시기: 어음의 교부일 또는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어음할인료 지급해야 함

현금결제비율 유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해야 함

어음만기일 유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10.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13)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면제

지급기일 준수의 면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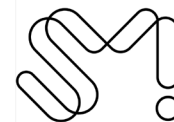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이후의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면제

- 발주자로부터 대금 미수령시에도 지급의무 발생
- 대금지급에 대한 특약조항 무효
- 수급사업자가 수령불능 상태이거나 가압류시 법원 공탁해야 지급의무 면제

III.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도모

- 지원 개요 및 신청방법



SM
ENTERTAINMENT

상생협력방안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6. ‘하도급계약서 발급’ 관행 정착을 위한 동의를결을 확정·시행
- K-엔터 업계 전반의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를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수급사업자를 위한 총 2억 원 범위 내 상생협력 방안 마련

상생협력방안	건강검진비 또는 명절선물 비용 지원	영상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 비용 지원	영상촬영장비 비용 지원
대상사업자	하도급법 적용 대상 수급사업자 (영상, MD, 공연 제작 등)	영상제작 분야 수급사업자	영상제작 분야 수급사업자
지원규모(총 2억)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1억 원 한도

- 상생협력방안의 구체적 내용 및 하도급법 적용대상 수급사업자들의 신청방안을 안내함

1. 협력사 직원 건강검진비 또는 명절선물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참고사항
지원 내용	선정 협력사 소속 직원에게 1인 20만 원 범위 내(단, 협력사당 최대 200만 원) 건강검진* 또는 명절선물** 지원 * 건강검진: 제휴 병원을 통해 통일적으로 20만 원 상당의 검진 서비스 지원 ** 명절선물: 소속 직원이 10인 초과인 협력사의 경우 협력사당 한도를 직원수로 나누어 가액이 20만 원 미만인 명절선물이 지원될 수 있음 (단, 1인당 최소 5만 원 이상의 명절선물을 협력사당 한도내에서 지원함. 직원수가 많을 경우 협력사당 한도 내에서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협력사 선택에 따라 건강검진*, 명절선물 중 택일 * 단, 소속직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직원을 10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검진 선택 가능
지원 대상	2024. 1. ~ 2024. 12.의 기간에 SM과 거래한 협력사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에 한정
선정 방법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영세사업자* 우선 고려 * 전년도 직원 수가 적은 순 기준으로 하되, 직원 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선정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른 상생방안과의 중복 선정을 피하기 위해 영상 분야 이외의 협력사를 우선고려할 수 있음.
비고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고갈시 지원 조기종료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방법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구글 독스로 신청서 제출(기재사항누락시 지원대상에서 자동 탈락) 1.사업자명(사업자 등록번호), 2. 전년도(2024년) 매출액, 3. 전년도(2024년) 소속직원 수, 4. 지원 대상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5. 지원대상 직원의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6. 지원대상(건강검진, 명절선물 중 택일),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기간	2025. 10. 27. ~ 2025. 11. 07.

2. 영상 편집 라이선스 비용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참고사항
지원 내용	선정 협력사에게 Adobe Premiere Pro(연 528,000원) 라이선스 비용 지원 * 라이선스가 필요한 협력사 소속 직원 별ID에 이용권한을 부여하며, 협력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ID는 최대 5개로 한정함.	SM이 해당 라이선스 비용 직접 결제한 후 협력사 사용 ID에 이용권한 부여 예정
지원 대상	2024. 1. ~ 2024. 12.의 기간에 SM과 거래한 영상제작 분야 협력사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에 한정
선정 방법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영세사업자* 우선 고려 * 전년도 직원 수가 적은 순 기준으로 하되, 직원 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선정	-
비고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고갈시 지원 조기종료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방법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구글 독스로 신청서 제출 (기재사항 누락시 지원대상에서 자동 탈락) 1.사업자명(사업자 등록번호), 2. 전년도(2024년) 매출액, 3. 소속직원 수, 4. 이용권한 부여 직원 명단 및 업무, 5. 대상 ID 목록,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기간	2025. 10. 27. ~ 2025. 11. 07.

3. 영상촬영장비 구매비용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참고사항
지원 내용	선정 협력사 에게 최대 500만 원 범위 내 구매 희망하는 영상촬영장비의 구매비용 지원	협력사가 영상촬영장비를 구매하고 그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이에 대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
지원 대상	2024. 1. ~ 2024. 12.의 기간에 SM과 거래한 영상제작 분야 협력사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에 한정
선정 방법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영세사업자* 우선 고려 * 전년도 직원 수가 적은 순 기준으로 하되, 직원 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선정	-
비고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고갈시 지원 조기종료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방법	다음 내용을 필수적 으로 기재하여 구글 독스로 신청서 제출 (기재사항 누락시 지원대상에서 자동 탈락) 1.사업자명(사업자 등록번호), 2. 전년도(2024년) 매출액, 3. 소속직원 수, 4. 구매 영상촬영장비(모델명 등), 5. 구매비용 및 영수증,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기간	2025. 10. 27. ~ 2025. 11. 07.

IV. 분쟁발생시 사내 신고 채널

사내 신고 채널



신고대상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대금결정 등



신고채널
(유선/이메일)

(Tel) **02-6240-9800**

(E-mail) **mutualgrowth@smtown.com**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관련 증거 등을
함께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